

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05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백

피고, 피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7. 23.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1750 판결

주 문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대여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보증채무금 또는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경 원고의 남편인 B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소개하였다. 이후 B와 피고는 2019. 1. 26. 서울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를 만나 D 사무실을 둘러보고 D의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B는 1억 원을, 피고는 B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D에 각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19. 1. 26.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8,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나. B는 2019. 1. 27. F에게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2019. 1. 26. 이체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F은 2019. 1. 27. 18:20경 원고 명의의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후 2019. 1. 27. 20:15경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9. 1. 27. 21:25경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 27. 원고가 F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반환받은 이후 B에게 D에 투자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27.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반환 또는

투자 손실에 관한 보장을 하였거나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또는 약정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9. 1. 27. 원고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인 이 사건 금원은 B가 원고 명의로 D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의 구매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F에게 이체하여 가상화폐의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9. 1. 27.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의 대여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차용금액과 변제기 등을 기재한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F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 명의로 2,000만 원의 G회사에 대한 구매확인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구매확인서에는

D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 점, 위 구매확인서의 구매일자가 2019. 1.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B가 D의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최초 구매자금을 입금한 날이 2019. 1. 26.이고 위 구매의사를 철회한 2019. 1. 27. 3,500만 원이 F에게 입금되었던 점, F은 위 구매확인서의 구매일자와 원고의 전화번호에 일부 오기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 명의의 구매확인서를 D으로부터 받았고, 당시 원고와 B가 서울에 없어서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500만 원에 대하여 위 구매확인서가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F은 2019. 1. 27.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반환한 뒤 피고로부터 자신 명의로 1,500만 원, 원고 명의로 2,000만 원을 다시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서 3,50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F은 피고에게, B가 구매자금을 보낸 다음날인 2019. 1. 27.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들이 투자사실에 대하여 난리를 친다고 하면서 당장 돌려달라고 하여 반환을 하였으므로 B의 일을 처리해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B는 직접 F에게 전화를 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들들이 허락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④ B는 이 사건 금원 송금 이후 투자금 및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D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2019. 3. 초순경 D의 실질적 대표자 등이 구속되고 D의 불법영업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는 후 F에게 “원고의 예금계좌로 전액 다 보내주세요. 막내아들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전액 다 입금해 주세요.” 등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거나 이 사건 금원의 반환약정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중전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효진, 판사 이지영, 판사 김윤선